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수학급 설치 연차별 계획 수립·제출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55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1]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설립 계획	7
[참고자료2]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급 증설 계획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생략) <u><신설></u>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u>제13조제3항에</u>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 <u>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u> ----- -----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7조제1항1)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 초등·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인원 기준이 정해짐.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은 유치원 과정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제1호).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호),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제3호).

그러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급의 인원이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2024년 기준 10.1%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특수학교(급) 과밀학급 현황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15,676	1,610	10.3%	16,211	1,496	9.2%	17,001	1,499	8.8%	17,759	1,766	9.9%	18,552	1,882	10.1%

자료: 교육부

현행 「특수교육법」 제12조는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제2항).

개정안은 교육감에게도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법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 교육감이 수립·제출하는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학급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 환경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개정안과 같이 교육감이 지역 단위로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학급 설치 계획이 해당 운영계획에 포함되도록 강행규정을 두는 경우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현재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매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운영계획이 부록으로 첨부되고 해당 운영계획에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다수 시도교육청²⁾에서 이미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수립³⁾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지역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수립되던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미 매년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현황을 포함한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별 중장기 특수학교(급) 설립계획도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별도 제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 위임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제출 시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데, 심사 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8개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경북, 전남)에서 관련 조례 제정·시행 중임.

3) 광주·전남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부산교육청의 경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나머지 4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주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186

[참고자료 1]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설립 계획(2024~2028)

연번	시도	학교명	소재지	학급수	학생수	개교(예정)
1	서울	(가칭)동진학교	중랑구	18	111	'27.9.
2	부산	(국립)부산대학교 부설특수학교	부산시	21	138	'27.3.
3	부산	(가칭)에코특수학교	부산시	31	190	'26.9.
4	인천	(가칭)영종학교	인천시	35	210	'27.9.
5	인천	(가칭)계양학교	인천시	42	250	'28.3.
6	대전	서남부학교	대전시	34	214	'26.3.
7	울산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울산시	28	181	'28.3.
8	경기	(가칭)안성특수학교	안성시	20	116	'25.9.
9	경기	(가칭)시흥특수학교	시흥시	30	186	'27.3.
10	경기	(가칭)새빛학교	수원시	20	125	'27.3.
11	경기	(가칭)여주특수학교	여주시	20	122	'28.3.
12	경기	(가칭)포천특수학교	포천시	21	132	'28.3.
13	경기	(가칭)왕숙1특수학교	남양주시	36	221	'28.3.
14	경기	(가칭) 고양특수학교	고양시	45	288	'28.3.
15	경기	(가칭)대장특수학교	부천시	34	211	'28.3.
16	충북	(국립)한국교원대학교 부설특수학교	충북	21	138	'27.3.
17	충남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	충남	18	126	'24.9.
18	충남	(가칭) 한여울학교	아산시	29	166	'27.3.
19	전북	(가칭)전북동부산악권특수학교	장수군	10	70	'26.3.
20	전북	(가칭) 군산지음학교	군산시	21	136	'27.3.
21	전북	(가칭) 전주보름학교	전주시	18	132	'27.3.
22	전남	(가칭)온미래학교	무안군	14	98	'28.9.
23	경북	(가칭)칠곡특수학교	칠곡군	27	150	'28.3.
24	경남	(가칭)진해나래울학교	창원시	31	206	'26.9.
25	경남	(가칭)김해제2특수학교	김해시	25	175	'27.3.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급 증설 계획(2024~2028)

시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서울	45	65	65	65	65	305
부산	37	23	22	20	19	121
대구	24	6	5	4	4	43
인천	50	55	40	35	30	210
광주	12	3	3	4	3	25
대전	16	11	9	8	8	52
울산	9	7	7	6	7	36
세종	23	15	8	8	6	60
경기	44	73	55	39	39	250
강원	21	16	14	15	14	80
충북	36	25	22	0	0	83
충남	43	58	50	47	44	242
전북	53	15	14	14	14	110
전남	59	59	51	51	48	268
경북	61	44	41	40	37	223
경남	39	40	40	40	40	199
제주	13	6	0	5	0	24
합계	585	521	446	401	378	2,331

자료: 교육부